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태풍 힌남노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사고 사건 항소심에서 저수지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전부무죄 판결을 재차 이끌어낸 사례

2026.11.25

I. 사안의 개요

대구지방법원은 2026. 11. 13.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포항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침수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냉천 상류 A 저수지를 관리하는 H공사 지사장 甲과 사업관리팀장 乙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5. 2. 13. 피고인들이 태풍 내습에 따른 저수지의 자연월류 사실을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사건 침수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① 냉천 범람이 이 사건 침수와 인명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 ② 다른 소하천에서 범람한 물, 무너진 해병부대 담장을 통해 내려온 물 등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 ③ 피고인들이 자연 방류 사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때 통보했다면 주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I.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존 수사단계와 1심에서 A 저수지를 관리하는 H공사 지사장 甲과 사업관리팀장 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서 치밀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세종은 면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A 저수지 관리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검찰(현 공소청)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저수지 관리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다투어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1심 공판 과정에서는 ① 피고인들이 관리하였던 저수지는 **홍수조절능력이 없는 자연월류식 농업용 저수지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인들이 저수지에서 방류되는 수량을 조절할 수 없었다는 전제사실을 강조하고, **② 냉천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현장검증**과 다수의 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 사건 침수 피해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③ 수사단계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않았던 주변 지역 군 부대 담장의 산발적 붕괴 및 지형적 요인에 따른 내**

수침수 요인을 정밀하게 입증하여, 하천의 범람 가능성에만 초점을 둔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종은 A 저수지 관리자들에게 이 사건 침수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저수지 관리자들의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도 변론을 담당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기록적인 강우를 비롯하여 인근 소하천의 범람, 해병부대 담장 붕괴, 우수관 역류 및 만조 등 다양한 기상적·지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A 저수지의 가능최대홍수량(PMF) 설계에 따라 비상수문을 사전 개방하여 대응조치를 취하고 포항시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H공사 지사가 관리하는 다수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장애를 복구하는 등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점, ③ A 저수지에서 자연 월류된 물이 냉천 범람의 주된 원인이었다거나 이 사건 침수 및 인명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1심에서 공소권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III.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 발생 시 자연월류 방식의 저수지 관리자에 대해 하류부 하천 인근의 주민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로, 최근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 관계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주체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피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사법상 대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연재난이 동반된 사고의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단순히 하천 상류부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하류부 인근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방류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였다면 침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수지의 구조 및 특성, 하천 주변의 지형적 요인 및 강수량, 유관기관의 재난대응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H공사의 지사장 甲과 사업관리팀장 乙을 변호하여, 경찰 및 검찰(현 공소청) 수사 대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심 공판 및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약 4년에 걸쳐 하나의 팀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각 단계와 절차별로 형사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긴밀하게 협업하고, 현장검증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 및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일관된 변론 논리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다수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사건의 기술적·과학적 쟁점과 형사법적 쟁점을 함께 분석하고, 이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유의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구성원

박세길
변호사

02-316-4634
skpark@shinkim.com

김태승
변호사

02-316-1771
tskim@shinkim.com

유재신
변호사

02-316-4084
jsyu@shinkim.com

한윤식
변호사

02-316-2879
yshan@shinkim.com

최진욱
변호사

02-316-7980
juchoi@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